

7. 新都市 住宅償還社債 債還業務 處理指針

建設部신기 30411-16275호 1991. 6. 8

1. 목적

'89. 9. 8 발행지침을 마련하여 '90. 4부터 발행해 오고 있는 신도시 주택상환사채가 6월 주택분양시부터 최초로 상환이 개시됨에 따라 세부상환지침을 확정하여 차질없이 분양되도록 하기 위함.

2. 사채상환방법

○ 주택상환 포기서 제출기한

- 사채상환공고시 정하는 기간내(일반 분양공고전으로서 7일전)에 서면으로 주택상환 포기의사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첨금지기간 적용 배제함.

○ 군별 구분신청

- 사채매입자가 1군 또는 2군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.

- 현금상환 또는 주택상환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군별 구분신청을 않은 경우에는 주택상환으로 간주하여 군 및 동호수는 컴퓨터추첨방법에 의거 임의 배정함.

○ 채권매입액 결정

- 사채매입자가 군별로 구분하여 신청한 해당군의 일반공급분 당첨자의 최저액을 적용함.

- 지역우선공급분과 일반지역 공급분으로 구분하여 해당 최저액을 적용함.

- 지역우선제도 시행 이전 사채매입자는 일반공급분 일반지역 당첨자의 최저매입액을 적용

- 지역우선제도 시행 이후 사채매입자는 지역우선분 신청자 및 일반공급분 신청자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 일반공급분 당첨자의 최저액을 적용함.

- 미달이 발생하여 순위별(20배수 내

의 구분 포함)로 최저당첨액이 상이한 경우 순위별 당첨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

- 다만 선순위(20배수 이내 등)에서 해당 군별 또는 지역별로 신청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최저약정액인 1만원을 적용
- 사채매입자는 매입 당시 당첨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자격으로 간주함.

○ 동호수 추첨 시간

- 일반공급분 청약접수 마감후에 추첨 하되 사채매입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먼저 추첨함.

3. 조치사항

○ 사채발행사

- 사채주택 분양(상환)공고와 함께 개별통지 등 적극조치로 사채매입자의 의사표시기회를 부여하여 추첨후 계약포기에 따른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함.

- 주택상환 여부 및 군별신청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양승인 신청함으로서 일반공급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함.

- 주택상환 대상자의 자격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확인

○ 한국주택은행

- 각 사채매입자 유형별로 매입하여야 하는 최저채권액을 확정하여 당첨자와 함께 발표하고 그 내용을 각 지점 등에 게시하여 안내

○ 주택사업자협회

- 본 지침을 각 회원사에 충분히 주지 시켜 상환에 차질없도록 조치